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7. 16 선고 2021가단30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5. 6. 23. 접수 제691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노승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영동군 답 369m'
2. 충청북도 영동군 도로 446m'
3. 충청북도 영동군 하천 777m'
4. 충청북도 영동군 구거 446m'
5. 충청북도 영동군 전 1,379m'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2013. 2. 20. 매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3. 5. 접수 제1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2005. 6.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5. 6. 23. 접수 제691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을, 원인 2008. 6. 12. 확정채권양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 6. 13. 접수 제940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2.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청구

원고는 지금까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2005. 6. 23. 설정계약되어, 2005. 6. 23. 접수 제69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미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본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